

1. 개정이유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에 대한 어업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규 인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양식 어업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업무수준 향상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에서 누락되거나, 법률에서 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사항 등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원의 인증심사원증 패용·제시 의무 신설(안 제11조 제3항 신설)

법률에서 인증심사원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인증 신청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증표의 종류에 대한 부령이 미비하여,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인증심사원증을 패용하고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 신설

나. 동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가능한 경우 명확화(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에서 동일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부령이 미비하여,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양호·보통 등급의 인증기관으로부터는 연속 2회 초과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재심사 규정 명확화(안 제12조 제3항 신설)

인증기관 등이 자의적 판단으로 재심사 신청을 거부하지 않도록 재심사 신청인이 재심사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증기관 등이 인증심사 결과 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 등이 반드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 신설

라.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신설(안 제15조, 별지 제8호의2서식)

인증서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 신청서에 대한 별도의 서식 없이 사유서를 받고 있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 별도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 처리의 효율성 도모

마. 인증표시 기준에 '인증기관명' 삭제(안 제18조 제2항)

현재 인증품 포장재에 표기되는 인증표시에는 인증기관명이 포함되어 있어, 인증갱신 등에 따른 인증기관 변경 시마다 포장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유기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표시 기준에 인증기관명 명시 규정 삭제

바.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관련 타법개정 반영(안 제18조의2 제2항)

수입 유기식품 신고와 관련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식약처)이 시행됨에 따라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문 개정

사. 인증심사원의 자격 분야 개편(안 제31조의2 제1항)

인증심사원 자격 분야가 「국가기술자격법」상 분류와 일치하도록 수

산을 어업으로 수정하고, 신규 인증심사원 양성 확대를 위해 수산질병
관리사 면허도 자격으로 인정

아. 인증심사원 자격신청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31조의2 제3항)

인증심사원의 자격 신청 시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서류 감소에 따
른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자.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 규정 신설(안 제31조의3 신설)

인증심사원의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에 관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인증
업무와 관련된 법령,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실무 등 인증심
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규정 신설

차.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기관 추가(안 제35조 제1항)

법률에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기관으로 소
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부령에는 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만 규정하고 있어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
리 내실화를 위해 조사기관으로 인증기관 추가

카. 조사공무원증 및 인증심사원증 패용 및 제시 의무(안 제35조 제3항)

법률에서 조사 진행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증표의 종류에 대한 부령이 미비하여, 조사기관
이 조사를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증 및 인증심사원
증을 패용하고 이를 제시하도록 규정 신설

타.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사 결과 통보 방식 규정(안 제35조 제8항)

조사 결과 통지 방식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사 결과 통보 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이 미비하여, 재검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파. 인증품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안 제36조의2 신설)

법률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관련 부령이 부재하여,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압류증 추가

하.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규정 신설(안 제36조의3 신설)

법률에서 조사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해 내려진 인증취소·정지 등 조치명령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관련 부령이 부재하여, 조치명령의 내용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하고, 구체적 사항은 수품원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거.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안 제36조의4~제36조의6 신설)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부령이 부재하여,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하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령 신설

너.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제공정보 명확화(안 제45조)

그간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이 누락되어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법 규정과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더. 수수료 납부방식 개선(안 제46조)

인증신청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경쟁제한적 규제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납부 방식에 계좌이체 등을 추가하여 규제 완화

러. 유기수산물의 전환기간 기준 마련(안 별표3)

국내 인증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를 통한 국내 인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 수산물 인증을 받기 전 유기 기준에 맞게 양식하는 최소 양식기간(전환기간)을 참고하여 수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어종별로 전환기간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

머. 인증사업자 및 인증품에 대한 처분기준 명확화(안 별표8)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정지 및 판매정지의 처분 기한이 불명확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품에 대해 복수의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처분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석에 혼란이 있는 바, 정지처분에 대한 기한

을 명확히 설정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품 모두에 해당하는 위반이 있을 시 각각의 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버.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일부 신설(안 별표9의2)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이 누락되어,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인증심사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공백이 있어 일부 처분기준 신설

서.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일부 신설(안 별표10)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이 누락되어, 법률에서 정하도록 한 인증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공백이 있어 일부 처분기준 신설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의 수위를 재설정

어. 무항생제수산물의 사료 첨가물질 범위 명확화(안 별표11)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고자 할 때, 사료에 첨가할 수 없는 '그 밖의 인위적인 합성물질'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여, 개정안 별표1 제1호가목 1)에 따라 '유기수산물의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물질을 제외한 그 밖의 인위적인 합성물질'로 범위를 명확히 설정

저. 인증 변경승인에 대한 수수료 기준 신설(안 별표13)

인증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민간 인증업체가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등 인증 신청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인증 변경승인에 대한 수수료를 2만원으로 규정하여 민간 인증업체의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교육훈련기관에 관한 정보를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여,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28. ~ 7.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필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다음 각 호의”로, “인증심사원”을 “담당 공무원 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인증심사를”을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3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신청

③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은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인증을 받지 못하여”를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재심사 신청”을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재심사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 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전단 중 “사유서”를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인증번호, 인증기관명”을 “인증번호”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사방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의 수입신고확인서를”을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로, “한다)에”를 “한다)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의 수입신고확인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산”을 각각 “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제4항”으로 한다.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와 관련된 법령
2.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3. 인증 심사기준 및 인증실무
4. 그 밖에 인증심사원의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

③ 교육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1회 실시하되,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는 평가 및 등급결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및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⑧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 통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인증품등의 압류)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6조의3(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4(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인증심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4. 인증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5(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의 공정한 평가 및 등급결정을 위해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인증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6(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심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나. 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 등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47조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나. 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 등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

별표 3 제2호에 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전환기간	관행양식장이 유기수산물 양식장으로 전환하거나 유기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유기수산물 양식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수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수산물의 종류별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환기간(최소 사육기간) 이상을 유기수산물의 인증기준에 맞게 양식해야 한다.
---------	--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8) 중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인증번호”로 한다.

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유기표시 도형

가. 유기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별표 8 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제2호바목부터 차목”을 “제2호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정지와 인증품등의 판매정지의 처분은 해당 인증품의 생산기간과 인증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바. 같은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인증사업자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 제1호(법 제34조제4항)	인증 취소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 제1호(법 제34조제4항)	인증 취소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통기준 (1)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 제2호(법 제34조제4항)	인증 취소

(2) 경영 관련 자료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때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
거나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나)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1)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
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수산종자
를 사용한 경우

(2) 허용하지 않는 사료를 급여한 경우

(3)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첨가
한 경우

(4) 잡조 제거와 병해 방제를 위하여 유기산
등 허용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5) 질병이 없는데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경우(별표 3 제2호바목1)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지 않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
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휴약
기간이 불필요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소 1주일)를 지키지
않고 유기수산물로 출하한 경우

(7) 유기수산물로 출하되는 수산물에서 수산
용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 허용기준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 (8) 성장이나 번식을 인위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합성호르몬제와 성장촉진제를 사용한 경우

다)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자

- (1) 가공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식품 첨가물·가공보조제를 사용한 경우(별표 3 제3호나목2)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가공과정에서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을 사용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

라) 무항생제수산물의 생산자

- (1) 질병이 없는데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경우(별표 11 제1호바목1)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
- (2)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첨가한 경우
- (3)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을 비치하지 않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휴약기간이 불필요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소 1주일)를 지키지 않고 출하한 경우
- (4) 무항생제수산물로 출하되는 수산물에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마)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생산자 양식 과정에서 잡조 제거와 병해 방제를 위하여 유기산 등의 화학물질이나 활성처리제를 사용한 경우 바) 유기식품·무항생제수산물등 취급자 (1) 유기식품·무항생제수산물등에 유기식품·무항생제수산물등이 아닌 제품을 혼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2) 취급자·수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별표 3 제4호바목의 유기수산물의 유해잔류물질 기준을 초과한 인증품을 판매한 경우 (3) 취급자·수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별표 11 제1호자목의 무항생제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인증품을 판매한 경우 (4) 취급과정에서 허용되지 않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4조제1항 제3호(법 제34조제4항)	인증 취소
5) 전업, 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제1항 제4호(법 제34조제4항)	인증 취소

나. 인증품등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 인증품에서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 물질이 검출되는 등 법 제19조제2항 또는 법 제34호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인증품등의 판매금지·판매정지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 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변경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제품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4) 인증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품으로 표시 또는 광고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5) 인증품등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법 제31조제7항 (법 제34조제5항)	해당 인증품등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

3. 처분 절차

가. 제1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다. 제2호나목5)에 따라 해당 인증품등의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자는 미

리 회수·폐기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회수·폐기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다목에 따른 회수·폐기 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9의2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법 제26조의 2제3항제1호 (법 제35조 제2항)	자격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6조의 2제3항제2호 (법 제35조 제2항)	자격취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유기식품등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인증한 경우	법 제26조의 2제3항제3호 (법 제35조 제2항)	자격취소		
라. 경미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유기식품등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인증한 경우	법 제26조의 2제3항제3호 의2(법 제35 조제2항)	시정 조치 명령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마.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6조의 2제3항제4호 (법 제35조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자격 취소

	제2항)			
바.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6조의2제3항제5호 (법 제35조 제2항)	자격 정지 6개월	자격취소	
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의2제3항제6호 (법 제35조 제2항)	시정 조치 명령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아.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 (법 제35조 제2항)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자격 취소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6조의2제3항제8호 (법 제35조 제2항)	자격 정지 3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자격 취소

별표 10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1호 (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나. 인증기관의 장이 법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지정 취소		

·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죄(인증심사업무와 관련된 죄로 한정한다)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법 제35조 제2항)			
다.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2호(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라.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3호(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유기식품등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인증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	지정 취소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20조(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재심사의 처리 절차·방법 또는 법 제21조(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갱신·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6호(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 법 제31조제7항제2호·제3호에 따른 명령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7호(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자. 법 제26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 중 인력 및 조직, 시설에 관한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8호(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차. 법 제26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기준 중 인증업무규	법 제29조제1항제8호(법 제35조제2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정에 관한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항)			
카. 법 제27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9호(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타.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이나 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10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파.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11호 (법 제35조제2항)	업무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하. 법 제32조의2(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법 제29조제1항제12호 (법 제35조제2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별표 11 제1호에 아목5)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그 밖의 인위적인 합성 물질. 다만, 별표1 제1호가목1)에 따른
유기수산물의 사료에 사용 가능한 물질은 제외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과 다목을 각각 다목과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만원	공통기준에 따라 산 정하는 금액 (현장심사를 한 경 우로 한정함)	공통기준에 따라 산 정하는 금액 (현장심사를 한 경 우로 한정함)
-----------------------	-----	---	---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4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
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행양식장이 유기수산물 양식장으로 전환하거나 유기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유기수산물 양식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수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설립연월일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교육훈련 분야 (주요 과정명을 3개 이내로 작성합니다)	1. 2.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 내용·방법,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1부 2.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부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

1. 교육훈련기관 지정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의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은 위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활용한 안내 및 홍보,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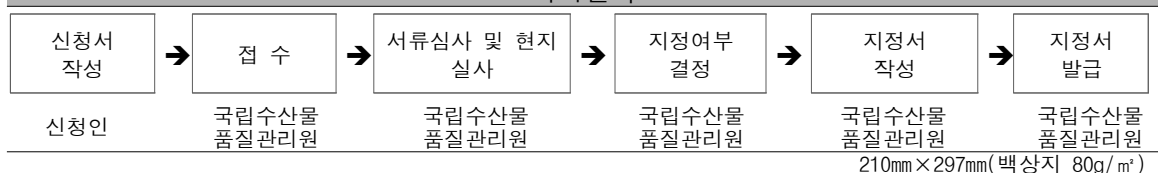
2. 친환경어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받은 자의 정보와 지정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관리·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하십니까?

* 신청인은 위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친환경어업 지원 사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 인증
[] 인증 갱신
[]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산자 수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재심사 신청항목		
	재심사 신청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 인증갱신[], 유효기간 연장[]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재심사 신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1.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재심사 신청항목은 인증기관에서 부적합 사유로 통보한 사항 중 재심사가 필요한 항목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인증번호: 제 호 (Certification No.:)			
인 증 서 CERTIFICATE			
《생산자용》 (For Producer)			
인증 구분 (Certification Type)		유효기간 (Term of Validity)	
생 산 자 (Producer)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 소 (Address)			
사업장 소재지 (Business Location)			
인증 품목 (Item Certified)		인증 면적 (Certified Area for Producing)	
인증 부가조건 (Additional Condition for Certification)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4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유기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 ☐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tem specified at above satisfies certification standard of ☐ organic fishery product, ☐ antibiotic-free fishery product, and/or ☐ activating treatment agent-free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Certification Date: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CHIEF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CERTIFICATION INSTITUTION			직 인

※ 지정사항 변경 시 변경내용을 뒤쪽에 기재한다.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연월일	구분	당초	변경	확인(날인)

인증번호: 제 호 (Certification No.:)			
인 증 서 CERTIFICATE			
《제조·가공 및 취급자용》 For Manufacturer · Processor / Handler			
인증 구분 (Certification Type)		유효기간 (Term of Validity)	
제조·가공자 (취급자) (Manufacturer · Processor) (Handler)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 소 (Address)			
사업장 소재지 (Business Location)			
취급 수산물의 산지 (Place of origin of handling item)	※ 취급자에게 발급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only for handler)		
품 목 (Item certified)			
인증 부가조건 (Additional Condition for Certification)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4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기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취급기준(무항생제수산물등의 취급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tem specified above satisfies the certification standard for manufacturing, processing, and/or handling of organic fishery product(including handling of antibiotics-free fishery product)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Promo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agement and Support for Organic Foods of the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Certification Date: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CHIEF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CERTIFICATION INSTITUTION			직 인

※ 지정사항 변경 시 변경내용을 뒤쪽에 기재한다.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연월일	구분	당초	변경	확인(날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명(단체명)	생산·제조·가공·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9항 및 「해양수산물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귀하

첨부자료	재발급 신청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상된 인증서를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인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구 분	당 초	변 경
	[] 사업장 규모 변경 []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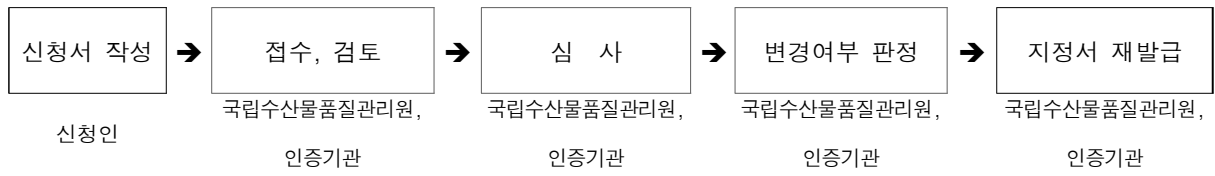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1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 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연월일	구분	당초	변경	확인(날인)

조사공무원증

(앞쪽)	
제 호 조사 공무원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55mm×85mm [폴리염화비닐([PVC])]	
(뒤쪽)	
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1.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판매· 유통 과정 조사 2.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 조사, 시료 채취 및 자료 제출 요구 3.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인증품 중 압류증

제 호						
기호	번호		유기수산물	유기 가공식품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비사용 수산물
압류품 인증사업자의 상호·소재지		성명		상호		
		인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압류품의 제조· 가공 또는 취급 사업자의 상호·소재지		성명		상호		
		인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압류 품명						
인증 유효기간						
압류 제품유형						
압류 수량						
압류 사유						
압류 일시		년 월 일 시 분				
압류 장소						
압류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8항 전단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압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제11조(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 ----- 다음 각 호의 ----- ----- ----- ----- ----- ----- 담당 공무원 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
<신 설>	1.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
<신 설>	2.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신청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은 공무원증 또는 별

③ (생 략)

<신 설>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지 못하여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장에서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재심사 신청을

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의2(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0일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재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③・④ (생략)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3조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

----- 법 제20조제6항
에 따라 재심사 신청-----

-----, -----

-----.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사
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재심사 신청을 받은 국립수
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
기관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 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

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유기식품의 표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별표 6의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제18조(유기식품의 표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증번호 -----

6의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
방법에 따라 표시판 또는 풋말
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18조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조사방법에 따라 유
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
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의 수
입신고확인서를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
에서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
발급하여야 한다.

1. 유기식품 중 「건강기능식품
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검사
방법

2. 그 밖의 유기식품: 「식품위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입식품안전관
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 법 제23조의2제
4항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
고, -----
----- 한다)에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는 유기식품의 수입신고확인서
를 ---.

<삭 제>

<삭 제>

생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
른 검사방법

③ ~ ⑤ (생 략)

제31조의2(인증심사원의 자격기
준 등) ①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
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식품 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친
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관련 분야에서 3년(산업기사
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
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인증심사원의 자격기
준 등) ① -----

-----.

1.-----
어업-----

2.-----
어업-----

3. (현행과 같음)

4. 「수산물질병 관리법」 제37
조의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② (현행과 같음)

③ -----

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
식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
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생략)

④·⑤ (생략)

⑥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의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
하여 고시한다.

<신설>

-----.

1. (현행과 같음)

<삭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및 제4항-----

-----.

제31조의3(인증심사원의 교육 등)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서 “해
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
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법 제2
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
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인증업무와 관련된 법령

	<u>2.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u> <u>3. 인증 심사기준 및 인증실무</u> <u>4. 그 밖에 인증심사원의 업무 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u> <u>③ 교육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1회 실시하되, 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u> <u>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는 평가 및 등급결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u>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내용·시간·방법 및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제35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	제35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

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③ ~ ⑥ (생략)

<신설>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④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⑧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 통보는 휴대전화 문자

⑦ (생략)

<신설>

<신설>

<신설>

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제36조의2(인증품등의 압류)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6조의3(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4(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

급결정 기준) ①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적정성

<신 설>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인증심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4. 인증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5(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의 공정한 평가 및 등급결정을 위해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인증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신 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6(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심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수산물품질

제45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식품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인증번호 및 인증 품목
가. 법 제24조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

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5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나. 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판매

3. · 4. (생 략) <u><신 설></u> 제46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	<u>정지 · 회수 · 폐기 또는 세 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u> 3.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u><삭 제></u> 제47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 ----- ----- ----- -----
--	--

<신 설>

나. 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 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 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 증품등의 판매금지 · 판매 정지 · 회수 · 폐기 또는 세 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